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8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문금주・한민수・강준현

문정복 • 이병진 • 이정문

이연희 · 김영배 · 김원이

조인철 • 조계원 • 박홍배

박해철 • 주철현 • 정진욱

김우영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, 축산업, 어업,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 부를 감면하고 있음.

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 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,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	제6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
감면)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	감면) ①
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	
기업에 대해서는 <u>2025년 12월</u>	<u>2029년 12월</u>
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제연도	31일
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	
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	
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	
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(제3호	
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	
한다)을 감면한다. 다만, 내국	
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	
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	
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	
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	
율을 적용한다.	